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발의자 : 문영민 의원(더불어민주당, 양천구 제2선거구)

(의안번호 : 제2774호)

21. 12. 01.
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안녕하십니까.

서울시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.

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문영민 의원입니다.

오늘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본 위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물 내 차도·보도의 청소 업무에 대하여 담당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도로 청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도로의 차도・보도에도로시설물 내 차도・보도를 포함하도록 하여도로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
- 자치구에서 관리하던
 터널・지하차도의 기계화 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
 도로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
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청소인력의 안전성과 함께
 청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오니

○ 본의원이 제안드린 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,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